

물가 급등 대책 지원 급부금 자녀 가산(아동 1인당 5만 엔) 안내

- 2023년도 주민세 비과세 등 세대에 대한 물가 급등 대책 지원 급부금의 자녀 가산(아동 1인당 5만 엔)은 국가의 '물가 급등 대응 중점 지원 지방 창생 임시 교부금'을 활용해 지급하는 급부금입니다.
- 본 급부금을 수급하려면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급부금 지급액

18세 이하 아동(주) 1인당 **5만 엔**(세대별 지급)
(주) 2005년 4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지급 대상, 절차 유무

지급 대상 세대

스기나미구 물가 급등 대책 지원 급부금(7만 엔 또는 10만 엔) 수급 대상 세대(주) 중 18세 이하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육아 세대

(주) 2023년 12월 1일(기준일) 시점에 스기나미구에 주민등록이 있으며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세대

《7만 엔》 세대원 전원의 2023년도분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

《10만 엔》 세대원 전원이 2023년도분 주민세가 균등할만 과세되는 자로 구성되어 있거나 2023년도 주민세가 균등할만 과세되는 자와 균등할 비과세자로 구성되어 있음

1 지급 대상 세대이면서
2023년도 스기나미구 물가 급등 대책 지원
급부금(7만 엔 또는 10만 엔)을
세대주의 계좌로 수급함

원칙적으로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뒷면①을 확인해 주십시오.

2 지급 대상 세대이면서
2023년도 스기나미구 물가 급등 대책 지원
급부금(7만 엔 또는 10만 엔)을
세대주 이외의 계좌로 수급함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뒷면②를 확인해 주십시오.

3 지급 대상 세대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 2023년 12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가 있음
- 혼자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등 다른 세대의 18세 이하 아동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 다른 세대의 18세 이하 아동을 세법상 부양하고 있음
- 2023년 12월 1일 이후에 이혼이 성립 또는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고 있음*

*이 요건에 해당할 경우 콜센터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③을
확인해
주십시오.

문의

스기나미구 물가 급등 대책 지원 급부금 콜센터



0120-378-233

접수 시간 8:30~17:15(토·일·공휴일 제외)

절차 진행 방법, 지급 시기

앞면 1 대상 세대

- 순차적으로 세대주 앞으로 '지급 안내'를 발송합니다.
- 2023년도 물가 급등 대책 지원 급부금(7만 엔 또는 10만 엔)의 수급 계좌로 입금합니다.

입금 시기는 '지급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앞면 2 대상 세대

- 순차적으로 세대주 앞으로 '확인서' 등을 동봉한 안내 서류를 발송합니다.
- 확인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동봉된 안내에 기재된 필요 서류(입금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등의 사본)를 첨부하여 반송해 주십시오.

제출 기한 ▶ 2024년 5월 31일(금)(소인 유효)

서류 제출 후 1개월 정도 후에 지급합니다.

앞면 3 대상 세대



<https://www.city.suginami.tokyo.jp/news/r0601/1092440.html>

- '자녀 가산 지급 신청서' 서식을 스기나미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앞면에 기재된 콜센터에 청구하여 필요 사항을 기재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일부 제외).

자세한 내용은 스기나미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제출 기한 ▶ 우편 송부 2024년 5월 31일(금)(소인 유효)

전자 신청 2024년 5월 31일(금) 오후 11시 59분

서류 제출 후 1개월 정도 후에 지급합니다.

세대원 중에 2023년 12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Q 저는 2023년도 물가 급등 대책 지원 급부금(7만 엔)을 수급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세대에는 기준일(2023년 12월 1일) 시점에 5세 아동과 3세 아동이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2일에 태어난 0세 아동도 있습니다. 자녀 가산을 수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준일(2023년 12월 1일)에 주민등록이 있는 18세 이하 아동의 자녀 가산의 경우 '지급 안내'를 발송하여 입금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5세와 3세의 자녀 2명분(10만 엔)은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단, 2023년 12월 2일에 태어난 자녀의 자녀 가산(5만 엔)은 '스기나미구 물가 급등 대책 지원 급부금(자녀 가산) 지급 신청서(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 ③의 절차를 확인해 주십시오. 2024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대한 물가 급등 대책 지원 급부금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개인정보 탈취'에 주의하세요!



자택이나 직장 등으로 스기나미구청(의 직원) 등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전화나 우편물이 온 경우에는 스기나미구청 보건복지부 관리과 물가 급등 대책 지원 급부금 담당(전화: 03-3312-2111(대표)), 경찰서 또는 스기나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제로 다이얼(전화: 03-5307-08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